

2024년 회원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

화성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의 검교정 비용,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, 각종 인증 획득에 대한 비용 지원을 통해 회원기업들의 제품의 품질 강화 및 보유기술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·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25일

화성상공회의소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2024년 회원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
- 나. 사업기간 : 2024년 1월 ~ 2024년 12월 (사업비 소진 시 까지)
- 다. 사업내용 : 검·교정, 지식재산권 등록(특허), 각종 인증 획득
- 라. 사업비 : 총 88,000,000원 (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)
- 마. 지원대상 : 화성상공회의소 회원기업

2.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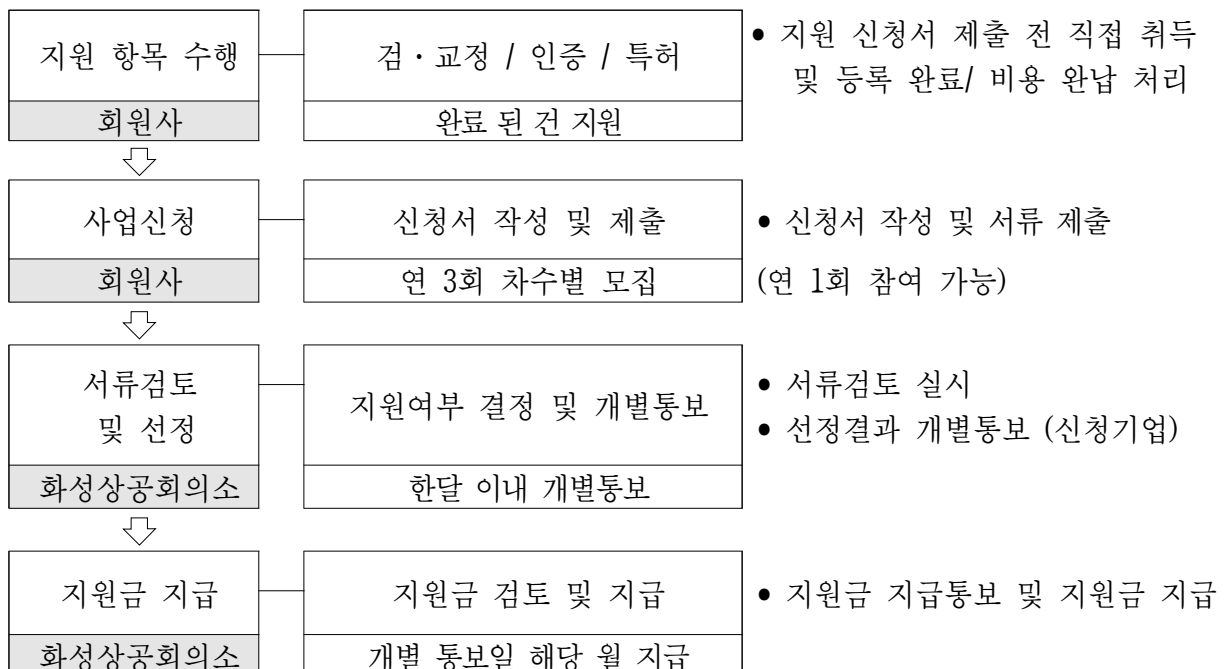
- 가. 지원범위

지원분야	지원규모	지원내용	지원방식	지원범위
검·교정	80개사 (택1)	한국인정기구 KOLAS에 등록된 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성적서	부가세 제외 회비납부액 차등 지원	회원기업
각종 인증		국내 및 해외 규격인증 혁신인증		
지식재산권 (특허)		국내외 특허 등록 지원비용		
기타	40개사	신용평가 및 기술평가 지원 (할인금액 제공)	당연회원사 (별도 공고)	

나. 지원조건

구분	상세 조건					
신용평가 기술평가	▶ 신용평가 및 기술평가 지원 서비스 : 이용료 할인 지원 (<u>별도 공고</u>)					
검·교정	▶ 비용청구범위 : 한국인정기구KOLAS에 등록된 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성적서 - 2023. 10. 1. ~ 2024. 9. 30. 기준 발급된 검·교정 성적서					
각종 인증	▶ 비용청구범위 : 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인증 수수료 - 2024. 1. 1. ~ 이후 획득(갱신)한 인증					
지식재산권 (특허)	국내 특허	▶ 비용청구범위 : 관납료 + 변리사선입 비용 중 등록사례금 실용신안, 디자인권, 상표권 등은 지원제외 - 단독 등록 건에 대해서만 지원 (최종권리자 기준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법인사업자</td> <td>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</td> </tr> <tr> <td>개인사업자</td> <td>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</td> </tr> </table> - 원출원에 대한 특허등록 건에 대해서만 지원 ※특허증, 특허등록원부, 특허정보넷키프리스에서 확인 가능 - 2023. 10. 1. ~ 2024. 9. 30. 기준 등록된 특허 건	법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	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
	법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				
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					
해외 특허	▶ 비용청구범위 : 해당국가 특허등록관납료 + 대리인을 통한 등록비용 - 실용신안, 디자인권, 상표권 등은 지원제외 - 단독 등록 건에 대해서만 지원(최종권리자 기준) - 해당국가 등록에 발생하는 비용만 인정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법인사업자</td> <td>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</td> </tr> <tr> <td>개인사업자</td> <td>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</td> </tr> </table> 2023. 10. 1. ~ 2024. 9. 30. 기준 등록된 특허 건	법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	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	
법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					
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					

3. 지원절차



4. 신청안내

가. 신청기간 : 1차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

나.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
접수처	온라인	7940info@gmail.com [조사진흥팀]
-----	-----	--

다. 신청서류 : 사업공고문 내 안내된 서류일체 (pdf파일 1개로 합본)

※ 기업체 신청서류 (공통 필수)

- ①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 동의서[별첨2] 1부
- ③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지[별첨3] 1부 (사업종료 후 송부)
- ④ 사업자등록증 1부
- ⑤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국세청) 1부.
- ⑥ 기업명의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1부
- ⑦ 비용 증빙서류 -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 (원본대조필) 각 1부

※ 기업체 신청서류 (해당사항 선택 제출)

- ① 특허등록 증명서류
- 국내 특허 : 특허등록원부, 특허증 각 1부

※ 특허등록원부 출력 방법

- 1) 특허로 홈페이지 회원인 경우
특허로(www.patent.go.kr) 접속 -> 조회/발급 -> 증명서발급 -> 발급신청 -> 등록원부교부신청
- 2) 특허로 홈페이지 비회원인 경우
특허로(www.patent.go.kr) 접속 -> 조회/발급 -> 등록원부접수발급(비회원) -> 등록원부신청

- 해외 특허: 해당국가 특허등록원부, 특허공보, 특허증 등
(특허등록일/특허명칭/특허등록번호(특허구분)/특허권자/해당 국가기관 직인이 포함된 서류 일체)
- ② 규격인증 : 인증서 사본 1부
- ③ 검·교정 : 성적서 사본(진별) 각 1부

※ 온라인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

- ① ~ ⑧ 각 서류들을 일체 칼라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제출
- ★ 서류접수 완료 확인 이후 서류보완사항 및 기타 증빙에 대한 요청은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업체담당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

5.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방법

가. 선정방법 : 비용환급 신청서 서류심사 후 적합업체에 한하여 선착순 지원

나. 선정결과 :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기업 통보

다. 지원방법 :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계좌입금

6.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대상
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선착순 접수·지원으로 인하여 사업 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

나. 지원신청서는 제출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

다.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의 일치 및 유효여부 확인 후 지급

- 라.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음이 확인된 경우 지원 제외
- 마. 지원금이 지급완료된 이후라도 부정 집행 및 중복 지원이 적발될 시 환수 가능
- 바. [회원기업지원사업] 기업당 사업지원 상한에 관한 사항

구분	맞춤형 마케팅 지원	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	비고
당연 (특별)	연간회비 50만원 이상 ~ 250만원 이하 (최대 100만원)		차등 지원 (사업 참여 직전 2분기 회비 납부 확인)
	연간회비 250만원 초과 ~ 500만원 이하 (최대 200만원)		
	연간회비 500만원 초과 ~ (최대 300만원)		
임의	택 1개 (최대 50만원)		

7. 상담 및 문의

[화성상공회의소 조사진흥팀]

- 031- 350- 7940

- 7940info@gmail.com [조사진흥팀 온라인 접수처]